

NEWS LETTER

2024-08-01

Legal Issue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구매한 행위의 위법성
- '협의'와 '합의'의 차이

MINWHO News

-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법률자문



Legal Issue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구매한 행위의 위법성

김경환 대표변호사

최근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유료로 판매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견된다. 아마 대부분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일 것인데, 판매자의 처벌 여부와 별개로 구매자 처벌 여부가 실무에서 많이 문제된다. 특히 판매자의 신원 파악이나 추적이 어려운 관계로 형사적으로는 구매자 위주로 처벌되고 있다.

특히 구매자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이 취득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구매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어 왔는데, 관련해서 최근 대법원(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의 유의미한 판결이 나와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판매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제59조 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전단으로 의율하고 있는데, 이 조문의 후단은 구매자에게 적용된다.

여기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구매자가 동의 없이 취득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사용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는 정보주체나 개인정보 보유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정보주체 등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봤다. 따라서 단순히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는 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따라서 구매자가 단순히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취득했음을 인지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로 처벌할 수 없게 됐다.

이 판결은 그 동안 실무에서 많이 문제 된 사안을 정리한 것으로써, 그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단순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면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됐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은 텔레마케팅 업무 등을 위해 개인정보 판매자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회에 걸쳐 유상으로 매입한 적은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취득된 개인정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개인정보 판매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거나 해킹 등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 적이 없었는바, 따라서 대법원은 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단순 구매자가 아닌 처벌되는 구매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개인정보의 출처나 그 유통 경위 등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논지다.

그동안 형사법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가 과도하게 적용된 사례를 많이 보아 왔는바,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무분별한 판매행위를 억제할 필요성은 절실한 바, 행정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프로필 보기](#)

02-532-3425
oalmephaga@minwho.kr

Legal Issue

'협의'와 '합의'의 차이

최주선 파트너 변호사

계약을 작성할 때 계약서 본문 안에, '협의'가 요구된다는 표현과 '합의'가 요구된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둘은 서로 다른 의미이고 특히 두 표현을 한 계약서 안에서 섞어 쓴다면 더욱 두 의미가 확연히 구별되어 해석된다.

예컨대 계약상대방이 계약 초안을 제시하였고 계약 초안 안에 '협의 후 조치한다'는 내용을 보고 내 동의를 있어야만 조치를 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안심했다가, 실제 분쟁 시 다른 상황이 벌어져 당황할 수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협의'와 '합의'의 의미가 구별되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두 단어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 1]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인사협의(합의)조항에서,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한 사례에서, 합의는 의견의 합치를 요구하는 것이고, 협의는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라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단체협약의 인사협의(합의)조항에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교섭 당시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하여 노동조합간부와 조합원을 구분하여 제한 정도를 달리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정도는 노동조합간부에 대하여는 조합원에 대한 사전 협의보다 더 신중하게 노동조합 측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조합원에 대한 인사권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단순히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라는 뜻의 사전 '협의'와는 달리,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의견을 성실하게 교환하여 노사 간에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사전 '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협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들 간의 완전한 의견 합치 내지 동의가 없더라도 다음 단계 조치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르면, '합의'와 '협의'가 구분되어 한 계약서에서 함께 사용될 경우, '합의'는 계약당사자들 간의 의견 합치 내지 동의에 이르러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고, '협의'는 단순히 의견수렴 절차만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협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들 간의 완전한 의견 합치 내지 동의가 없더라도 다음 단계 조치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사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연구개발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협약의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치는 방법으로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서는 연구개발성과실시의 기간 및 조건을 정하는 경우 '협의'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①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한쪽 당사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협약의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때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성과실시를 요청해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그 실시를 허락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시기간 및 조건은 서로 합의하여 정하되, 다른 자보다 실시를 요청한 연구개발기관에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우대해서 정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연구개발기관이 완전히 의견 합치 내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협약'을 거쳐 협약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시허락을 받기 위해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정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기관 간의 완전한 의견 합치 내지 동의 즉 '합의'가 필요하다.

위와 같이 '협약'은 의견수렴절차를, '합의'는 의견의 합치를 의미하는바, 따라서 계약서를 만들면서 향후 계약이행 과정에서 특정 사항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완전히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협약'보다는 '합의'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 최주선 변호사 네플라(NEPLA) 기고문



최주선 파트너 변호사, 변리사

[프로필 보기](#)

02-538-3424
choijs@minwho.kr

MINWHO NEWS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SW개발사로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고발당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자사의 블로그와 자사의 서비스를 홍보하면서 채권자의 서비스에 개인정보유출 관련 이슈가 있다는 점을 기재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며, 채무자의 블로그와 서비스 홍보에 기재된 문구는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채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무자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법률자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에 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며 그곳에서 사용되는 포인트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내용, 가맹계약의 의미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보도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의뢰인께서 기획하고 있는 새로운 서비스에서의 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른 신유형 상품권의 해당 여부까지 추가로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이에 고객은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현저히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 또는 기타 법률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민후로 연락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포스코타워 역삼 11층 / 21층

Tel. +82-2-532-3483 Fax. +82-2-532-3486

www.minwho.kr



본 자료는 법무법인 민후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및 소식 자료로, 모든 법률적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내용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민후에 있으므로, 무단 배포, 복사, 게재를 금합니다.